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사상 제일 엄격한 「식품안전법」 통과

개정 「식품안전법」이 지난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10장, 154개 조문으로 구성된 개정 식품안전법은 “사상 제일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개정 식품안전법은 (i)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과일, 야채, 차 재배 시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ii) 건강보조식품의 설명서에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iii) 영유아 식품 생산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iv)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쇼핑몰 업체에 대한 책임을 신설하고, (v)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 의무 및 위반 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무원,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 발표

국무원은 5월 초에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은 정부의 역할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조력자와 인도자로 정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부의 행정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i) 완화된 거시적 발전환경 조성, (ii) 세제 혜택 부여, (iii) 기업의 시장진입 요건 완화, (iv)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 (v) 전자상거래 관련 취업 및 창업 지원, (vi) 산업구조 조정 촉진, (vii) 기초물류인프라 건설 개선, (viii) 대외개방 수준 향상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 외자기업 외환자본금 인민폐 환전 방식 개혁

외환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외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외환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외자기업의 외환자본금에 대하여 자율환전제도를 시행하여, 외자기업이 자주적으로 인민폐로 환전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ii) 외자기업의 외환 자본금 사용용도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관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iii) 외자기업이 환전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으로 중국 경내에서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iv) 환전 자금의 지급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였으며, (v) 기타 직접투자항목하의 외환 계좌 내 자금의 결제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였고, (vi) 사후 감독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